

#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한선\* · 김보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Han-Seon Park\* · Bo-Ram Kim\*\*†

\*, \*\*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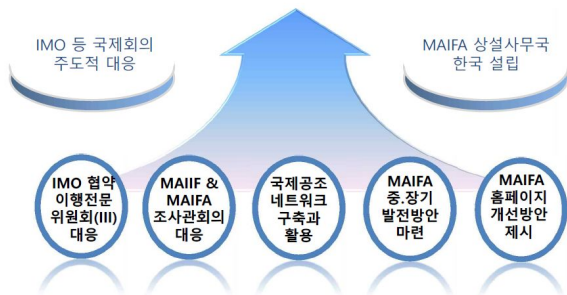
**핵심용어** :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 조사코드, 세계 해양사고조사기관, 아시아지역 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

**Key Words** :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International Forum,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Forum in Asia

### 1. 개요 및 연구목적

유엔해양법(UNCLOS) 제94조 권고 및 IMO 결의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아시아국가들의 해양사고조사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해양사고조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사고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시아국가 조사관의 역량배양과 조사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 해양사고조사 협력 강화 방안



### 2. 연구방법

국가정책 수립 및 법률전문가, 국제협력 전문가, 홈페이지 개선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해양사고가 빈번한 아시아 주요국가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해양사고 조사전문가 활용, 세계해사대학과 같은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신화된 정보 수집 및 공식안전성평가 및 위해도 평가 전문가를 자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등 협약이행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제 개발을 통한 IMO, MAIIF, MAIFA 의제문서 제출 및 동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우리나라는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 MAIIF 및 MAIFA 등에 참가하여 의제 검토 및 개발을 통한 발언으로 입지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전문가 체계 및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책, 해양사고조사 분석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해양사고 조사 및 보고서와 관련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서 절차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MAIIF의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아시아 회원국들을 위한 MAIFA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무국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반응과 인력 및 재정 확보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한계가 있다.

### 4. 결론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국제규정 준수 및 절차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으며,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CI code)에 따라 해양사고 용어 정의에 대한 재정립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동 지침은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IMO 해양사고조사 협약이행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용 구성이 미흡하다.

또한, 정부는 해양사고 분석전문가 양성 정책개발 및 시설확충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First Author : hspark@kmi.re.kr, 051-797-4627

† Corresponding Author : zzz3678@kmi.re.kr, 051-797-4640